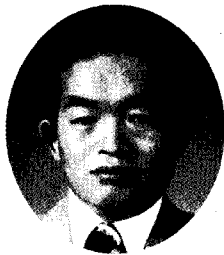


ITU-T SG3 회의 참가보고



장 석 운
한국전자통신연구소 기술경제연구부 책임연구원



권 수 천
한국전자통신연구소 기술경제연구부 선임연구원

1. 머리말

SG3는 ITU-T 산하의 15개의 Study Group중 국제전기통신서비스들의 요금, 수지결산 및 정산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연구하는 그룹으로서, 현재는 B. Rouxville(프랑스)이 의장을 T. Matsudaira(일본)와 J. Paymans(네델란드)가 부의장을 맡고 있다. 1993 - 1996년의 연구기간 동안에는 1993년 Helsinki에서 개최된 세계전기통신표준화회의(WTSC : World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Conference)에서 22개의 연구과제가, 그 후 하나가 더 추가되어 총 23개의 연구과제가 할당되어 활동해 왔다.

이번의 ITU-T SG3회의는 '93 - '96 연구기간의 종합정리를 위해 지난 3년간의 연구결과를

정리하고 다음 4년간의 연구기간(1997 - 2000) 동안의 연구과제를 9개로 결정하여 ITU위원회(Council)에 보고할 예정이다.

본 고에서는 이번회의의 주요 의제인 Call Back관련사항과 국제전화서비스의 정산원칙 재검토 등 주요 회의결과 그리고 다음 연구기관 동안의 연구과제를 정리하였다.

2. 회의 개요

- 회의명 : ITU-T SG3 회의
- 회의장소 : 스위스 제네바 ITU 회의실
- 회의기간 : 1996. 3. 11. ~ 3. 20.
- 관련 문서번호 : ITU, TSB Collective-letter 8/3

3. 회의 참석자

가. 국내참석자 : 총 10명

성명	기관 및 직위	비고
장석윤	ETRI, 책임연구원	Head of Delegation
권수천	ETRI, 선임연구원	
김철수	ETRI, 선임연구원	ISDN과금관련 기고서 발표
전민희	ETRI, 연구원	ATM과금관련 기고서 발표
조유현	KT, 제네바사무소장	현지참석
홍순모	KT, 국제사업본부 과장	
이윤미	KT, 통신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Call Back관련 기고서 발표
이석희	KT, 통신경제연구소 전임연구원	
김성근	Dacom, 국제전화사업본부 과장	
김용기	Dacom, 국제전화사업본부 대리	

나. 국가별/기관별 참석자수

- 미국 14명, 영국 5명, 프랑스 5명, 독일 6명, 일본 13명 등 총 180명
- 기관별 분포
 - 의장단 : B. Rouxville 외 6명
 - 주관청 :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48개국 96명
 - 통신사업자 (ROA) : 26개국 37개사업자 70명
 - 연구기관/산업체 : 2개기관 2명
 - 지역 및 기타국제기구 : 3개기관 3명
 - 기타 : 2개기관 2명

- SG3에 중요한 ITU-D의 SG1 및 2 작업의 진도 보고
- 국제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및 수지결산원칙에 관한 OECD작업의 진도 보고
- 전기통신서비스의 자유화관련 WTO작업의 진도 보고
- 차기 연구기간(1997 - 2000)중의 SG3의 역할 및 신규과제초안 마련에의 영향검토
- 연구과제 Q.12/3 및 Q.22/3 논의

4. 회의 주요의제

가. 총회의 주요의제

- 1) 개회의 주요의제
 - SG3관련 ITU위원회 ('95.6.) 작업결과 보고
 - 전기통신자문단(TSAG)회의 ('95.9.) 주요결과 보고

2) 폐회의 주요의제

- WP (working party) 회의 보고
- 특별연구반(Ad hoc Group)의 보고
- 차기 연구기간(1997-2000)의 신규과제초안 작업반의 보고
- 9개의 권고초안 승인
- SG3의 WTSC에의 보고서 마련

나. WP별 주요 의제

- 1) WP 2/3 (ISDN서비스의 요금 및 수지결산)
 - 전문가회의('95.10.) 결과 검토

- 광대역 및 멀티미디어 이슈
- WTSC에의 최종보고서 초안 논의
- 차기 연구기간의 연구과제초안 논의

2) WP 3/3 (공중데이터망에서의 가입전신, 정보 및 데이터전송서비스의 요금 및 수지결산)

- WTSC에의 최종보고서 초안 논의
- 차기 연구기간의 연구과제 초안 논의
- 차기 연구기간의 작업계획

3) WP 4/3 (국제전화, 무선 및 TV전송서비스의 요금 및 수지결산)

- 연구과제 5/3 논의
- 위원회에의 보고초안 퇴고
- 차기 연구기간의 연구과제 마련

4) WP 5/3 (해상, 육상 및 공중 이동서비스의 요금 및 수지결산)

- WTSC에의 최종보고서 초안 논의
- 차기 연구기간의 연구과제 초안 논의
- 차기 연구기간의 작업계획

5) Ad hoc Group (Call Back의 조사연구)

- 관련문서 검토 : 타 SG로부터의 연락문서 ; 기술적, 재정적, 규제관련 이슈 ; ITU의 역할
- 원칙 논의 및 진척
- 권고 초안 또는 결의문 초안 마련
- 위원회에의 보고 초안 논의

5. 회의의 특징

- SG3 및 산하 4개 WP와 특별연구반 (Ad hoc Group)의 의장단을 포함하여 총 50여개국 93개 기관에서 180명이 참석한 대규모 회의로서 1993년부터 1996년까지 활동기간을

총정리하는 모임임.

- 보통때에는 WP 또는 특별연구반별로 서로 다른 시기에 관련 주제에 대해 집중토론을 행하나, 이번 회의에서는 SG3 전체회의와 맞물려 참석자 전원이 동시에 전체회의 및 WP 회의에 참석하였음.
- 회의는 미리 정해진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관련 주제별로 기고서(지연기고서 포함)의 저자가 직접 발표한 후, 토론을 거쳐 (잠정)결정에 이르는 형식을 채택함.
- 국제적으로 논란거리(hot issue)가 되고 있는 Call Back서비스에 대해 전체 회의기간 8일 중 2.5일이 할당되어 집중 논의되었으며, 미국만이 소비자이익을 위해 허용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반면,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은 중립적인 입장이며, 중국, 일본 및 기타 국가들은 위법이라고 미국의견에 강하게 반발함. 타협점으로서 곧 각국 주관청에게 Call Back서비스에 대한 질문서를 송부하여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였음(6의 다. 참조).
- 기타의 다른 주제들에 대해서는 미국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들이 주도하고 간간히 인도 시리아, 케냐 등이 개도국을 대표하여 반대의견을 개진하였음.

6. 회의의 주요 결과

가. 총회의 주요 회의결과

1) 개회의 주요결과

- SG3관련 ITU위원회의 작업결과 보고
 - 결의문(Resolution) 2, 21 및 국제전기통신규칙 (ITR)의 기본정신에 근거하여 각국은 통신주권을 가지며 따라서 국제역통화(Call Back)를 규제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는 동시에, 타국의 통신주권도 존중하여야 함.

국제표준화 회의동향

ITU-T SG3 회의 참가보고

- ITU사무국장이나 전기통신표준화국 (TSB)이 각국의 Call Back에 관한 정책 또는 규제에 대한 정보를 실행게시판에 게재함.
 - Call Back과 관련하여, SG2의 기술적인 연구와 더불어, ITR의 적용여부 및 ITR에 규정된 “국제전기통신서비스”에 해당여부, 개도국의 통신망구축계획에의 폐해 그리고 징수요금의 불균형에 대해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함.
 - 전기통신자문단 (TSAG)회의 주요결과 보고
 - 권고안 승인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결의문 NO.1을 개정하기로 함.
 - ITU-T회의참가자는 전자문서처리 (EDH : electronic message handling)를 이용하여 기고문 제출.
 - Q. 23/3 (과금정보교환)은 SG3에서 계속 논의함이 타당함.
 - SG3에 중요한 ITU-D의 SG1 및 2 작업의 진도보고
 - 보편적 서비스 관련문제, 전파관리 비용조달 문제, 신기술의 영향 및 서비스 상용화 문제, 교육훈련 문제의 논의.
 - Call Back이 개도국에 미치는 재무적 효과 분석을 SG3에 촉구.
 - 국제전기통신 서비스의 요금 및 수지결산 원칙에 관한 OECD작업 진도보고
 - OECD회원국간 계산/정산요금은 1990-95년 동안 30-90% 하락된 것으로 분석
 - 각 회원국은 계산요금에 대한 정보를 발표하기로 함
 - OECD는 1998.1.을 기준으로 현재의 정산체제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산체제를 이용할 것임
 - 전기통신서비스의 자유화관련 WTO작업의 진도보고
 - 1996.4. 말 WTO의 기본통신협상그룹 (NGBT : negotiating group on basic telecommunications)에서 기본통신서비스에 대한 결의 필요
 - 원칙적으로 제3세계 국가들이 자유화의 혜택을 함께 누릴수 있도록 하는 접속체계에 대한 결의도 필요
- ## 2) 폐회에서의 주요결과
- WP회의 보고 : “나. WP별 주요 회의결과” 참조
 - 특별연구반의 보고 : “다. 특별연구반의 주요 회의결과” 참조
 - 차기 연구기간 ('97-2000)의 신규과제 초안 작업반의 보고
 - 현재의 33개의 연구과제(Question)를 10개로 축소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행정절차 생략
 - SG3의 세계전기통신표준화회의 (WTSC)에 의 보고서 마련
 - 보고서는 1부와 2부로 구성
 - 제1부 : 현 연구과제들에 대한 일반적 논의 및 공식 답변
 - 제2부 : 차기의 연구과제들의 문안 확정
- ## 나. WP별 주요 회의결과
- ### 1) WP 2/3
- 1996년 1월 Miami에서 개최된 전문가그룹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그 보고서를 승인함.
 - SS # 7 이용에 대한 과금과 정산의 D. 2xx 권고초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이 권고초안에 대한 SG3의 승인을 요청.
 - Frame Relay서비스에 대한 D. 22x 권고초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이 권고초안에 대한 SG3의 승인을 요청.
 - 전문가그룹은 현 통신운영현황을 반영하기 위해 D. 211 권고를 수정하였는데, WP 2/3은 일반적으로 수정안에 만족을 하고 있으나 SG 11로부터 약간의 문제제기가

있었음. 따라서 SG11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권고의 본 의미를 손상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고 SG3가 이를 인정하면 이 수정권고안의 승인절차를 추진해 나가기로 함.

- ATM과 관련하여 많은 기고서가 제출되었고 이들의 미래 연구활동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고려하여 ATM기술에 의해 지원되는 서비스에 대한 연구를 연구과제 G/3에 포함하도록 수정.
- 연구과제 23/3 (과금정보)을 검토하고 그 문제의 복잡성과 다른 관련 SG로부터 많은 자문을 구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TSAG에 통보하기로 결정. 또한 과금정보의 교환을 위하여 SG4에서 연구중인 통신관리망 (TMN : telecommunication management network)기능에 대해 자문을 요청.

2) WP 3/3

- COM3-R 15성명서에서 SG1이 F계열에 있는 Teletex와 Transferred Account(TA)서비스 권고를 폐기하기로 결정하면 WP 3/3은 그와 관련된 권고 D. 50과 D. 98 권고를 폐기하도록 추천할 것을 선언한 바 있음. 금년 3월 SG1이 제안한 행동을 취함에 따라 WP3/3은 D.50과 D. 98 권고를 폐기하도록 SG3총회에 추천하기로 결정.
- 2개의 연락문서를 간단히 검토함(SG7으로부터 받은 Data Compression에 대한 과금지침의 필요성에 관한 문서와 SG1으로부터 받은 Voice Mail Store and Forward서비스의 정산과 징수관련 문서).
- 차기 연구기간의 연구일정에 대해서는 제출된 기고서를 토대로 결정하기로 함. 연구과제 F/3과 H/3하의 서비스는 비교적 안정적이기 때문에 주 연구활동은 연구과제 G/3에 대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따

라 연구과제 G/3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부여.

3) WP 4/3

- D. 176 권고를 일부 수정하였으나 보다 심도 있게 수정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차기 연구일정에 이 권고의 수정작업을 포함하기로 결정.
- D. 150 권고를 수정하기로 합의하였으며, D. 151 권고를 폐기할 것인지 여부는 관련기고서가 없으므로 다음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함.
- D. 115와 D. 116 권고를 수정하기로 하였으며, D. 116 권고에 대해서는 일정한 문구를 추가.
- SG1으로부터 받은 연락문서중 국제 Premium Rate 서비스에 대한 과금 및 정산원칙 관련 권고와 국제 Shared Cost서비스에 대한 과금 및 정산원칙관련 권고는 SG3에서 개선하도록 하고, Voice Mail Store and Forward 서비스에 대한 과금 및 정산원칙을 보다 명확히하기 위해서 WP 3/3과 함께 SG1에 연락문서를 보내기로 결정.
- 전기통신표준화국(TSB)이 계산요금인하 변동추세 설문과 관련, 미응답국은 조속히 회신해 줄것을 요청.

4) WP 5/3

- SG1으로부터의 2개의 연락문서를 검토함 (FPLMTS관련과 FPLMTS이동터미널에 의한 긴급서비스 접속관련).
- FPLMTS이동단말에서 긴급통화서비스 이용시 과금은 발신단말에 부과되어야 함을 SG1에 통보하기로 함.
- 차기 연구기간의 의제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연구과제 C/3와 D/3는 성격상 연구범위가 유사하므로 하나로 통합될 수 있는 것으로 합의함.

다. 특별연구반의 주요 회의결과

- Call Back통화의 인식이 기술적으로 매우 곤란하며 이 서비스가 국제전기통신서비스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견일치도 보지 못하였고 어떤 합의에도 이르지 못함.
- 기본적인 ITU문서에 체화된 바와 같이 자국의 전기통신을 규제하는 각국의 국가주권이 재확인됨. 그런 자격으로 각국은 Call Back을 허용하거나 금지 또는 규제하는 권한을 지

- 님. 일국의 규제조치는 타국에 의해 그들 국내법의 구속범위내에서 존중되어야 함.
- 각국은 타국의 국내법을 존중해야 하며 관련된 주관청 및 통신사업자(ROA)들은 의견 교환과 상호 협조하여야 함.
- 공세(bombardment : 반복적 통화호출((constant calling) 및/또는 폴링(polling, 지정된 특정단말국의 송신 권유))법 및 응답생략(answer suppression)방법은 회피되어야 함.
- Call Back의 다른 방법 또는 새로운 방법의

*TSB의 설문서 내용

1.주관청 명세
 a)주관청명 :
 B) 연락인 :
 전 화 :
 팩 스 :
 E-mail :

2.귀국에서의 Call-back 사용여부 :
 -금지
 -규제
 -비규제
 -미결정

3.귀국은 귀국 영토내에서 Call-back사업자에게 사업을허가하는가?
 -그렇다
 -아니다

4.귀국은 향후 Call-back을 금지/규제하려고 계획하는가?
 (올바른 답에 v표시하세요)
 -아니다
 -결정되지 않았다
 -그렇다, 기존의 법/규칙에 의하여
 -그렇다, 곧 발효될 입법을 통하여

5.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싶다면 아래에 귀하의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영향은 지속적으로 분석되어야 함.

- 통신사업자들은 그들의 국내법의 구속범위내에서 국제전기통신규칙(ITR) 제 6.1.1조 및 ITU-T 권고 D. 5를 고려하여 징수요금수준을 비용지향기준으로 설정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함.
- 계산요금 및 계산요금 배분은 중재의 기회를 가능한 한 감소시킬 수 있도록 권고 D. 140에 따라 비용지향으로 전환되었으면 함.
- 전기통신표준화국(ITU-TSB)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관련정보를 수집, 갱신 및 배포하므로써 Call Back업자의 활동에 대해 국가적 입장 또는 구속에 관한 회원상호간의 정보교환에 있어서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면 함. ITU-TSB를 통해 각국이 그들의 국내법하의 Call Back에 대한 지위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ITU-TSB에 의하여 질문서가 정기적으로 돌려졌으면 함.

7. 차기회의 일정

- 회의명 : ITU-T SG3 임시총회
- 회의기간 : 1996년 11월 11일(월)~11월 15일(금)
- 회의장소 및 회의개최 기관명 : 제네바, ITU-T
- 회의의 주요안건 : 이번 연구기간의 최종마무리

8. 차기 연구기간(1997~2000)의 연구반 구성 및 연구과제

- SG 3 - 요금 및 결산원칙의 개발, 그리고 관련 경제적 및 정책이슈의 연구
- 연구과제 (Question) A/3 및 B/3에 대해서는 ITU-D와 긴밀한 협조와 상호의견교환이 요구됨.

1) Question A : 전기통신서비스 및 망의 개발과 관련된 경제적 이슈 및 국가정책의 영향 연구

○ 연구필요성

자유화, 경쟁, 수요의 세계화와 같은 국제통신 시장조건하에서 주요 개발은 유일한 전기통신전문 국제기구로서의 ITU의 국제적 지침 개발과 연구가 필요함.

회원국 및 통신사업자들이 경제적, 정책적 이슈들과 국제 전기통신 환경의 변화가 가져온 영향에 대한 공통적인 이해를 공유하는 일이 필요함.

요금 및 수지결산원칙에 관한 D계열 권고들은 국제전기통신 서비스의 경제적, 정책적인 견해를 공식화하는 실제적인 지침을 제공함. 그러므로 SG3은 이들 이슈들을 논의하기 위해 선진국들 및 개발도상국들을 대표하는 규제자 및 사업자들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의임.

개발도상국의 특정 요구를 위해 특별한 배려가 요구됨.

○ 연구범위

대체통화방식(Call Back), Carrier Refile, 단순 재판매, 새로운 상호접속제도와 같은 발전의 시사점들의 연구가 필요함.

공공 및 보편적 서비스의 세계적 유지 및 개발을 보장하기 위한 경쟁보호장치(Competitive Safeguard)의 필요성이 다루어져야 함.

1988년 국제전기통신규칙(ITRs)의 적부가 연구범위에 포함되어야 함.

본 연구과제의 연구는 그 결과로서 이러한 이슈들을 종합하고 정보목적에 위한 일반지침과 새로운 또는 개정된 D계열 권고들을 산출해야 함.

○ 우선순위(Time frame)

시장상황이 급속히 진전하는 여건하에서, 본 과제의 연구에 최상위 우선순위가 부여되어야 함.

○ 협력선 : ITU-T SG1

2) Question B : 국제 전화 서비스의 과금, 수지결산 그리고 정산원칙의 개정 및 개발

○ 연구필요성

기술적, 상업적, 그리고 규제상의 전기통신 환경의 급속한 진전은 현재의 정산요금 체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체계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것임. ITU는 이같은 미래의 변화에 주역을 담당해야 함.

특히, 현재 국내 및 국제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기통신 서비스의 자유화는 ITU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는 다음의 두가지 새로운 상황을 만들 것임 :

- 많은 국제관계에서 발생할 비대칭적인 규제 제도는 이들 국제전화통화량에 대한 기존의 수지결산 체계에 영향을 미칠 것임.
- 중대되고 있는 국제관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수사업자 체제 또한 기존의 수지결산 원칙의 재검토를 불가피하게 할 것임.

경쟁은 기존의 정산요금 체계하에 운영되는 사업자들과 정산요금분야 밖에서 활동하는 재판매사업자들간에 발생하고 있음. 둘다 국제전화 서비스라는 같은 생산물을 판매함.

따라서 국제전화서비스의 체제뿐만 아니라 기존체제에 대한 심각한 재검토가 요구될 것임. 국제전기통신 서비스의 수지결산원칙에 관련된 기존 권고들이 재검토되어야 함.

관련된 요금 및 수지결산원칙의 개발은 SG1에서 개발된 국제전화 서비스들의 제공을 지원하는데 필수적임.

많은 새로운 국제서비스들(특히, 한정되지는 않지만, 이동성을 지닌)은 고객에 대한 적시과금 및 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한 적시보상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의 수집, 전송 및 처리의 능력을 제

공하는 세계적 하부구조 (global infrastructure)의 지원을 필요로 함. SG3는 요금 및 수지결산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 같은 하부구조의 필요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여야 함.

이러한 점을 연구함에 있어서, 개발도상국들의 특별한 요구에 적절한 배려가 있어야 함.

○ 연구범위

- 비용 요소의 보다 정확한 상황에서의 도달
- 비용지향 정산요금으로의 추진 지속 및 그 실현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권고 D. 140 및 그 부록들을 더욱 발전시키는 데에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함.

국제전기통신 서비스의 수지결산원칙에 관련된 다른 기존 권고들에 대한 재검토가

- 중계 설비들의 보상 및
- 정산요금의 분배에

초점을 맞추어 계속되어야 함.

재판매/재전송과 관련한 수지결산 이슈들 및 기존 수지결산체제에 대한 그들의 영향에 대한 연구 또한 필요할 것임.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에서의 기본 전기통신 서비스의 검토를 고려하기 위하여 새로운 보상체계로의 적절한 전환준비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여 종단요금(terminal tariff)과 같은 개념들이 정산요금의 현 체계의 개정 및 발전에 어느 정도까지 도움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 또한 필요할 것임.

○ 우선순위

전술한 발전속도로 볼 때, 본 연구과제에 최상의 우선순위가 부여되어야 함.

○ 협력선

본 연구과제는 필요시 SG1과 함께 연구될 것임.

3) 연구과제 C : 국제이동 서비스를 위한 과
금, 수지결산 및 정산원칙의
개발

○ 연구필요성

기존 이동서비스가 확장되고 신규 서비스들이
개발 및 도입되고 있음.

이동 서비스는 국제망과 연결되고 타 이동서
비스망과 상호 연결될 필요가 있음

관련된 과금 및 수지결산 원칙의 개발은 SG1
에서 개발된 국제 이동서비스들의 제공을 지원
하는데 필수적임.

○ 연구범위

이동단말을 통해 제공되는 전기통신서비스들:

- 육상, 해상 및 공중이동서비스

UPT

FPLMTS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들

위성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미래 글로벌 이
동서비스들

○ 협력선

- ITU-T SG1, SG11 및 SG13
- ITU-R SG8

4) 연구과제 D : 비이동 국제전기통신 위성서
비스의 과금 및 수지결산 원
칙의 개발

○ 연구필요성

높은 통신처리량, 동적으로 할당된 대역폭 및
광범위한 지역 커버와 같은 위성 및 단말에 대
한 기술적 진전과 더불어 시장 및 규제 변화
는 위성시스템의 매력적인 특성과 역량을 이용
하는 신규서비스들을 가능하게 함. 특히, 새로운
양방향 다지점 서비스들은 비정지위성을 이용하
여 제공되거나 멀티미디어 서비스들의 무선접속

및 유통을 제공할 것임. 비이동성 국제통신 위성
서비스는 다른 망(이동 및 고정)과의 연동이 필
수적임.

관련된 과금 및 수지결산 원칙의 개발은 SG1
에서 개발된 비이동 국제 위성서비스들의 제공
을 지원하는데 필수적임.

○ 연구범위

비이동 단말을 통하여 제공되는 전기통신서비
스들:

- 한지점에서 다수지점으로의(point-to-multi-
point) 서비스
- 다수지점에서 한지점으로의(multipoint-to-
point) 서비스
- 양방향 복수지점(two-way multipoint)
VSAT서비스
(성형 혹은 망형으로 제공)
음성 및 텔레비전 전송서비스
- 때때로 제공
- 일시적 및 영구적 임차

○ 협력선

- ITU-T SG1 (SG1 작업계획의 연구과제 Q.
9/1) 및 SG4
- ITU-T 연구과제 Q. C/3 : 연구접근방법의
공통성 및 작업계획 (특히 새로이 나타나는
글로벌 위성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비 이
동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한)의 조화를 확보
하기 위해 적절하다면 공동의 권고도 가능

5) 연구과제 E : 데이터 및 메세지 통신 서비
스에 대한 과금 및 정산 원
칙의 개정 및 개발

○ 연구필요성

전기통신의 상업적 및 규제환경의 세계적인
지속적 변화는 보다 새로운 데이터 서비스 및

전통적 텔레마틱 서비스로 정의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충분한 관심이 주어지기를 요구함. 사실, 어떤 서비스들의 중단이 이미 발생하였으며 보다 전통적인 텔레마틱 서비스는 발전 가능한 전기통신의 선택대안으로서 보호하기 위하여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됨. 이 경우 서비스 제공자들간의 수지결산 및 정산에 대한 조치들의 재무적 결과들이 다루어져야 함.

관련 과금 및 수지결산 원칙의 개발은 SG1에서 개발된 데이터 및 메시지 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지원하는데 필수적임.

○ 연구범위

본 연구과제의 연구범위는 특히 권고 F. 400 및 F. 500하에서 제공되는 텔렉스, 전보, 팩킷교환 데이터서비스, 프레임릴레이, 메세징서비스, 번호안내서비스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우선순위

본 연구과제는 중간 정도의 우선순위가 부여되어야 함.

○ 협력선

- ITU-T SG1, SG7 및 SG13

6) 연구과제 F : ATM에 의해 지원되거나 세계적인 정보기반(Global Information Infrastructures)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들을 포함한 B-ISDN 서비스 및 멀티미디어 특성의 전기통신서비스들의 과금 및 수지결산 원칙의 개발

○ 연구필요성

새로운 서비스의 출현 및 이들 서비스들은 새로운 사업자들과 전통적 사업자들의 협력에 의해 제공될 것이라는 사실이 국제전기통신의 전망을 변화시킬 것임. 이같은 서비스들은 강력한 새로운 데스크탑 컴퓨터기술을 이용하여 급성장하고 있음. 다수사업자에 의해 운영되는 통신망과 서비스들의 비용을 고려하는 그같은 서비스들의 국제적인 제공을 위한 기반구조의 구축이 필요함.

관련 과금 및 수지결산 원칙의 개발은 SG1에서 개발된 서비스들의 제공을 지원하는데 필수적임.

○ 연구범위

본 연구과제의 연구범위는 음성, 팩스, 도형, 화상(images), 영상을 포함하는 서비스들의 제공 비용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포함하여야 함. 새로운 권고는 이들 서비스들이 시장에 출현하기 전에 요구될 것임. 연구범위는 다양한 전송 프로토콜을 활용한 세계적 교환망상에서 제공되는 국제서비스들의 연구를 포함할 수 있을 정도로 광범위하여야 할 것임.

○ 연구기간

본 연구과제는 멀티미디어 서비스들의 폭발적 성장의 잠재력에 비추어 볼 때 최우선순위를 지녀야 함.

○ 협력선

- ITU-T SG1, SG8, SG11, SG13 및 SG15

7) 연구과제 G : 다른 연구과제들에서 다루지 않는 서비스들을 위한 과금 및 수지결산 원칙의 개정과 개발

○ 연구필요성

본 연구과제는 아직 알려지지지는 않았으나 차기 연구기간 동안 발생하여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이슈들을 연구하는 기회를 SG에게 제공하게 될, 특정 이름으로 대체가능한 연구과제를 뜻함.

관련된 과금 및 수지결산 원칙의 개발은 SG1에서 개발된 서비스들의 제공을 지원하는데 필수적임.

○ 연구범위

본 연구과제의 연구범위는 반드시 멀티미디어 일 필요가 없는 신규 출현 서비스들을 이해하여 권고를 제공할 필요성을 포함함.

○ 우선순위

본 연구과제의 우선순위는 연구기간이 진행됨에 따라 증가될 것임.

○ 협력선

- ITU-T SG1 및 SG8

8) 연구과제 H : 관련 경제적 및 정책적 이슈와 함께 비용모형 개발을 위한 지역적 비용산정 연구

○ 연구필요성

비용과 공통적인 비용산정 방법론에 기초한 국제 수지결산을 위한 요금의 기본요소 정립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SG3은 비용모형 개발을 위한 지역별 연구를 계속 수행하여야 함.

다양한 지역에 따른 상이한 시장조건의 관점에서 볼때, 연구과제 Q. A/3와 Q. B/3의 연구는 그 이슈의 지역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에 의해 보충되어야 함.

○ 연구범위

연구는 국제 요금 및 수지결산 원칙을 다루기

위해 SG3내에 조직된 지역연구반들에 의해 지역기준으로 수행될 것임. 즉:

아프리카지역- Regional Tariff Group for Africa(TAF)

라틴아메리카지역- Regional Tariff Group for Latin America (TAL)

아시아·오세아니아지역- Regional Tariff Group for Asia and Oceania(TAS)

유럽 및 지중해연안지역- Regional Tariff Group for Europe and Mediterranean Basin (TEUREM).

○ 우선순위

연구결과는 새로운 또는 개정된 형태로 D. 300R부터 D. 600R계열 권고들이 개발되어야 하며, 연구과제 A/3와 B/3연구에 송부되는 지역적 정보보고서와 협정 또한 적절하다면 개발되어야 함.

9) 연구과제 I : 요금 및 수지결산 원칙을 다루는 권고들을 위한 용어 및 정의들

○ 연구필요성

현재 존재하지 않는 용어의 새로운 정의를 내리고 또 기존의 일부 용어들의 기존 정의를 표준화하는 일이 필요함.

또한 SG3에서 신중하게 사용되는 일부 정의가 어떤 경우에는 다른 SG에서 활용되는 술어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연구범위

새로운 그리고 개정된 정의들은 요금 및 수지결산 원칙을 다루는 기존 및 새로운 권고들에 사용되는 용어들을 적절하게 정의하기 위해 필요함. 예상되는 결과는 D.000 권고의 개정임.

- 협력선
본 연구과제는 관련된 모든 SG와 협력하여 연구되어야 함.

9. 참석소감

- 이번 회의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Call Back서비스의 적법성 및 허용여부에 관하여 반대입장에 있는 참가국 상호간에 긴밀한 상호협조 체계가 있었다. 이로 볼 때 자국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이해를 같이하는 다른 회원국들과 정보의 상호교류 및 전략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공동으로 문제해결에 대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 이웃 일본의 경우 ITU에의 “전문가파견, 회의주재 및 회의참가”의 3차원적인 국제활동을 전개하고 있었으며, 각자가 역할을 적절히 분담하여 일본측의 견해를 반영하였다. 일본의 이 같은 국제활동은 매우 바람직스럽게 보였으며, 우리나라도 체계적으로 국제적인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함과 동시에 세계화에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차기 연구기간의 중심적 연구과제는 국제 이동통신, 위성통신 및 멀티미디어 관련 새로운 서비스들의 요금, 수지결산 그리고 정산 원칙 들로서 우리도 이들에 대한 사전 조사연구가 시작되어야 마땅할 것으로 본다.
- SG3회의에서는 국제전기통신서비스들의 요금, 수지결산 및 정산원칙에 대한 조사연구결과와 각국의 견해를 발표하고 의견조율을 거쳐 원칙들이 수정/변경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회원국가 및 사업자들은 자국 또는 자사의 이해가 밀접히 관련되어 있어 세계적인 동향파악과 동시에 이해보전의 차원에서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같은 차원에서 언급한다면 그저 단순한 기고문 제출이나 몇 분/몇 시간 동안의 기고문 발표만을 위해서 전회의 기간 내내 국외출장을 가는 사고는 인식의 전환을 가져와야 할 때라고 사료된다. 그 보다는 회의의 전반적인 흐름과 중요 의제에 대하여 보다 철저히 사전준비를 한 다음 회의에 임해야 할 것이다.
- 끝으로, SG3 연구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세계적인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경영/경제 및 행정/정책분야의 지식뿐만 아니라 국제전기통신서비스, 특히 신규서비스들의 제공과 관련된 전반적인 기술적 사항들에 대한 지식도 함께 겸비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과학과 기술의 양분야를 동시에 꿰뚫는 안목의 바탕위에서 참신한 아이디어가 전개될수 있을 것이다. 